

# 동양생명 퇴직연금보험(무배당) 이율보증형 상품설명서



본 상품설명서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법령 및 **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**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 본 상품설명서를 통해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**약관을 반드시 확인** 하시기 바랍니다. 「**상품설명서**」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상품에 가입할 경우 **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**, 해당 내용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**가입여부를 결정**하시기 바랍니다.

본 상품은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'원리금보장형'상품으로, 은행의 예·적금과는 다른 상품입니다.

본 상품은 보험기간 만기 이전에 중도해지시 약정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 상품에 대한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, 동양생명보험 홈페이지(www.myangel.co.kr) 또는 퇴직연금 콜센터(1899-4707)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.

## 1. 상품 주요내용

1. 상품명 : 동양생명 이율보증형보험 (만기: 1년, 1.5년, 2년, 2.5년, 3년, 5년)
2. 가입대상 : 퇴직연금 전용상품 (DB : 사업장)
3. 상품유형 : 원리금보장형 보험(무배당)상품
4. 만기지정방법 : 1년, 1.5년, 2년, 2.5년, 3년, 5년 중 상품 만기를 직접 지정해야 합니다.
5. 예금자보호 여부

구분	보호여부	내용
DB	비해당	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

## 6. 이율적용방법

-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은 회사가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"사업방법서" 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에 결정합니다.
- 동 상품의 신규 상품 편입일(또는 만기 재예치일)에 당사 홈페이지에 공시된 이율이 적용 됩니다.
- 확인방법 : 당사 홈페이지(www.myangel.co.kr, 공시실 → 퇴직연금 상품공시 → 퇴직연금 사업자공시 → 원리금보장상품현황)에서 확인 가능
- 이율계산방법 : 신규 상품편입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시(보증)이율 적용

## 7. 만기재예치 방법

- DB제도: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별도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, 만기일에 직전 단위보험과 이율보증기간이 동일한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자동 재예치. 당초 약정된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여 재예치되며, 재예치 시점의 적용이율 적용

## 8. 중도해지이율

상품 만기(이율보증기간) 경과 이전에 해지되는 경우 **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여 환급금을 지급합니다.**

(단, 관련법령 및 약관에 따른 특별해지의 경우 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)

구분	중도해지(일반)	특별중도해지
사유 (세부사항 상품약관 확인)	만기 이전 상품변경 또는 계약해지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,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한 경우</li><li>• 사용자의 파산 또는 폐업된 경우</li><li>•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</li><li>•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</li><li>• 수수료의 납부(적립금 차감)</li><li>• 연금전환 선택(개인형IRP)</li></ul>
해지이율	공시(보증)이율 X 80%	없음(공시(보증)이율 100% 적용)

## 2. 금융소비자 권리보호 안내

구분	내용
<p><b>청약철회</b></p>	<p>청약철회는 관계법규에 따라 <b>“일반금융소비자”와 동일한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.</b>(퇴직연금 계약자 또는 가입자는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7항제3호의 “전문금융소비자”에 해당 됨)</p> <p>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 또는 가입자는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6조 및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납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부담금 등을 돌려드립니다.</p> <p><b>단,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부담금 납입일로부터 30일이 초과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</b>(단, 전문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로 간주되는 경우는 제외)</p>
<p><b>위법계약 해지</b></p>	<p>계약자 또는 가입자는 회사가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을 체결한 경우,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</p> <p>회사는 계약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,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.</p>
<p><b>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</b></p>	<p>이 계약관 관련하여 의문사항 또는 민원이 있을 경우 퇴직연금 관리 담당자, 콜센터(1899-4707), 및 인터넷 홈페이지(www.myangel.co.kr)에 문의 할 수 있고,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, www.fss.or.kr), 1372소비자상담센터(국번없이 1372)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단, 분쟁조정 신청 이후 또는 조정신청 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합니다.</p>

### 3. 상품설명 확인사항

구분	내용
상품설명 내용	상품유형, 가입대상, 상품개요, 상품구조, 보험기간, 적용이율에 관한 사항,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, 만기재설정, 예금자보호여부, 청약철회, 위법계약해지,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
핵심설명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확정기여형(DC)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은 <b>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"5천만원까지"</b> (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 별 보호상품 합산) 보호됩니다.</li> <li>□ 확정급여형(DB)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</li> <li>□ 이 상품의 적용이율은 "사업방법서"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각 <b>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(또는 재설정일)에 결정</b>하며, 당사 홈페이지 공시를 통하여 적용이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</li> <li>□ 단위보험 별로 <b>이율보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중도해지(상품변경 포함)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이 적용</b>됩니다. (특별중도해지 사유는 미적용)</li> </ul>

본 상품설명서를 교부 받았고, 설명내용에 대하여 설명 들었음을 확인 합니다.

- 이 상품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과 상품설명서의 내용은 동일 합니다.
- 이 상품 설명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.
- 계약자 또는 가입자가 상품설명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서명(전자서명 포함)하실 경우에는 추후 소송이나 분쟁에서 계약자 또는 가입자 등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.

퇴직연금 담당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상품설명서에 따라 충분히 설명하였고, 설명한 내용은 이 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.

담당자명	(서명)	일자	
------	------	----	--